#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0.

발 의 자: 문정복・김승원・진성준

이규민・장경태・윤건영

강준현 · 조오섭 · 박상혁

조응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음.

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,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관 런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이후 2~5년 경과 시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,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 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 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, 제4항 신설 등).

현행법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는 상태임.

그런데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·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과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"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"을 "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사전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하고,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연수교육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후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와 근무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수교육을 이수한 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, 교육과정,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과징금) ① 시·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

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· 도지사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40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수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	n -1
현 행 	개 정 안
제5조(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	제5조(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
위와 교육 등) ① (생 략)	위와 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제1항에 <u>따른 부동산개발</u>	② <u>따라 부동산개발 전</u>
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	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
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	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(이
경우 교육기관, 교육과정, 사전	하 이 조에서 "사전교육"이라
교육의 면제대상, 그 밖에 필요	한다)을 받아야 하고, 사전교육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
<u>다.</u>	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연수교
	육"이라 한다)
	<후단 삭제>
<u>&lt;신 설&gt;</u>	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
	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
	지난 후에 제4조제2항에 따라
	다시 등록사업자와 근무하는
	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
	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수
	교육을 이수한 지 1년 이내인
	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
	시하기 위한 교육기관, 교육과
	정,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

<신 설>

제40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2(과징금) ① 시·도지사 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 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 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는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 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·도지사는 「지방행정제 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4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

<u><신 설></u>

- <u>1.</u> (생 략)
- 2. ~ 4. (생 략)
- ④ (생 략)

 1.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

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

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